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등>

■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562호)
■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578호)
■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23625호)
■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644호)
■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841호)
■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868호)
■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940호)
■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080호)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113호)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231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257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268호)
■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357호)
■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410호)
■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437호)
■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500호)
■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506호)
■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524호)
■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524호)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560호)
■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581호)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689호)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707호)

2023.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개 요

【윤미향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서정숙의원안】

1. 제안 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김영주의원안】

1. 제안 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정우택(Ⅰ)의원안】

1. 제안 경위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정우택(Ⅱ)의원안】

1. 제안 경위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조해진의원안】

- 1. 제안 경위 8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정우택(Ⅲ)의원안】

- 1. 제안 경위 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

【이동주의원안】

- 1. 제안 경위 1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

【강득구의원안】

- 1. 제안 경위 1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

【서삼석의원안】

- 1. 제안 경위 1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

【박덕흠의원안】

- 1. 제안 경위 14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4

【김미애의원안】

- 1. 제안 경위 1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6

【송재호의원안】

- 1. 제안 경위 1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7

【서병수(Ⅰ)의원안】

- 1. 제안 경위 1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

【서병수(Ⅱ)의원안】

- 1. 제안 경위 20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

【서병수(Ⅲ)의원안】

- 1. 제안 경위 2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

【김교홍(Ⅰ)의원안】

- 1. 제안 경위 2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

【김교홍(Ⅱ)의원안】

1. 제안 경위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

【박재호의원안】

1. 제안 경위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

【천준호의원안】

1. 제안 경위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5

【김영선의원안】

1. 제안 경위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7

【안호영의원안】

1. 제안 경위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8

【최기상의원안】

1. 제안 경위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9

II. 검토의견

1. 농어업을 위한 지원 31

가. 자영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 (조해진·송재호·안호영
의원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31

나. 귀농인이 취득하는 임야 및 준보전산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박덕흠의
원안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38

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김교홍(Ⅰ)·송재호·안호영의
원안 제11조 및 제14조) 45

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윤미향·송재호의원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52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60

가. 다자녀 양육자 또는 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신설 등(서
정숙·강득구·김미애·김영선의원안 제22조의2) 60

나.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정우택(Ⅲ)의
원안 제38조제4항) 68

다.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이동주의원안 제40조의4
신설) 73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78

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서병수(Ⅰ)의원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78

나.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서
병수(Ⅱ)의원안 제45조의2) 81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85
가. 국민신탁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 신설 (천준호의원안 제53조)	85
5.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91
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 설치 선박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및 자발적 설치 선박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서병수(Ⅲ)·서삼석의원안 제 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91
나.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정 유예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배제 (정우 택(Ⅱ)의원안 제68조제2항 및 제177조의2)	98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정우택(Ⅰ)의원안 제70조의2 신설)	109
라. 도시첨단물류단지 지방세 감면 신설 (최기상의원안 제71조제1항)	117
6.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124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감 면 신설(박재호의원안 제76조제3항 신설)	124
7.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30
가.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김교홍(Ⅰ)·(Ⅱ)의원안 제87조)	130
8. 지방소득세 특례	135
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김영주의원안 제97조의4제2항)	135

I. 개 요

【윤미향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윤미향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7. 31.

다. 회부연월일 : 2023. 8.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협 등”)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씩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 등과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협 등에 대한 부동산 특례 적용 대상 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하여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서정숙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정숙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7. 31.

다. 회부연월일 : 2023. 8.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김영주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주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2.

다. 회부연월일 : 2023. 8.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와 더불어 현행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의료비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의료비’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직계비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하여,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4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우택(I)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정우택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3.

다. 회부연월일 : 2023. 8.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외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정우택(Ⅱ)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정우택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16.

다. 회부연월일 : 2023. 8.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2년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두면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매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침수, 사고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후 폐차 시점에 따라 취득세 추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는데,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 또는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2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 최소납부제에 따라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금리 인상에 따른 판매 부진, 재고 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자동차등 업계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조해진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조해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18.

다. 회부연월일 : 2023.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물가상승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연장은 불가피하고 농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감면율을 상향시켜 자경농민의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정우택(Ⅲ)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정우택의원 등 17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22.

다. 회부연월일 : 2023. 8.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3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

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
조 제4항).

【이동주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이동주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30.

다. 회부연월일 : 2023. 8.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것보다 더 크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시기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 지자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최근 극한호우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는 소극적이었음.

따라서 재난피해가 발생했고 재난피해가 인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4 신설).

【강득구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31.

다. 회부연월일 : 2023. 9.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상한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서삼석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5.

다. 회부연월일 : 2023. 9.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해상교통 안전성을 증진하려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신설 등).

【박덕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6.

다. 회부연월일 : 2023. 9.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업은 산악지형과 기후 특성으로 인해 농수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생산비가 높아 임가소득이 '22년 기준 3,790만 원으로 농가 대비 82%, 어가대비 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임업은 투자비용을 소득으로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선대에서 조림한 나무를 그 자손 또는 양수인이 이어서 가꾸고 수확하는 방식으로 영농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농업과 비교할 때 귀농인에 대한 혜택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간 성실하게 산림을 가꾸어온 임업인들이 원활하게 임야를 거래하고 다음 임업인이 임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

해서 기존의 감면혜택 대상인 보전산지와 함께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신규 산림경영 인력이 직면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또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경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산림경영 유도 및 산림의 경제적·공익적·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8조).

【김미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6.

다. 회부연월일 : 2023. 9.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송재호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송재호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8.

다. 회부연월일 : 2023. 9.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도시로의 인구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농협조합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생산물의 가공·판매,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농업과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어업인·임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있음.

반면,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2012년 농협중앙회에서 분할하여 신설된 농협경제지주는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및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말로 3년 더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서병수(I)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병수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12.

다. 회부연월일 : 2023. 9.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학협력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신기술분야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서병수(Ⅱ)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병수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13.

다. 회부연월일 : 2023. 9.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현재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과학은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분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서병수(Ⅲ)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병수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15.

다. 회부연월일 : 2023. 9.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했을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과학의 고도화를 고려할 때, 해상교통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 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김교홍(I)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15.

다. 회부연월일 : 2023. 9.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7조).

【김교홍(Ⅱ)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18.

다. 회부연월일 : 2023. 9.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경제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박재호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18.

다. 회부연월일 : 2023. 9.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매입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 신설).

【천준호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천준호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19.

다. 회부연월일 : 2023. 9.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문화재청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지난 2021년 5월, 국민신탁법이 개정되어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의무·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환경부는 개정법에 따라 2022년 6월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함.

개정된 국민신탁법에서는 국민신탁단체가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으며, 그중 하나가 법 제15조의 조세감면 조항임.

국민신탁법 제1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정국민신탁법인과 달리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담되어 신탁운동에 필수적인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음.

특히 국민신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신탁단체 역시 이 조항을 준용하게 됨. 즉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 불가능하며 법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함. 따라서 국민신탁단체는 민간단체이나 사유재산 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그럼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미개정으로 자산을 취득(매입 또는 수증)할 때마다 관련 세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민신탁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신탁단체에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3조).

【김영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선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20.

다. 회부연월일 : 2023. 9.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14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되, 자녀 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차등을 두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안호영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25.

다. 회부연월일 : 2023. 9.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시설, 농업기계와 관정시설(管井施設) 등 농기계류, 농업법인의 농지와 영농·유통·가공 목적 부동산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일정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3항).

【최기상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26.

다. 회부연월일 : 2023. 9.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 경감하고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물류단지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반물류단지, 2015년말 도입된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있음. 같은 법 제58조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국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2015년말 도입된 도시

첨단물류단지 제도에 따른 물류단지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특히,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물류산업도 물류 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인 추세를 고려할 때 도시 첨단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제 지원을 동일하게 하여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II. 검토의견

1. 농어업을 위한 지원

가. 자영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 (조해진·송재호·안호영의원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농업용 시설(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농기계·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제7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안호영의원안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농업용 시설과 농기계·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 3년씩 연장하고, 송재호의원안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며, 조해진의원안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현행	조해진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

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 ----- -----60을 2026년-----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 ----- ----- ----- -----2026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2026년 12월 31일-----. ② ----- ----- ----- -----2026년 12월 31일-----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6①) 송재호의원안 : 3년(~2026년)		

현행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¹⁾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으며,²⁾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이하 “농기계류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³⁾

-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 시설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

이와 관련하여 3건의 개정안들은 감면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의 경우 **안호영의원안**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있는 반면, **송재호의원안**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조성을 위한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6조제1항)만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있으며, **조해진의원안**은 농지 및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시키고 있음.

농기계류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7조)과 관련하여서는 **안호영의원안**만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있음.

[개정안들의 비교]

구분		현행	조해진의원안	송재호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에 대한 감면 (§6①)	감면대상	농지,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면내용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60% 감면		
	일몰기한	~2023년	<u>~2026년</u>	<u>~2026년</u>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감면 (§6②)	감면대상	농업용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면내용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60% 감면		
	일몰기한	~2023년	<u>~2026년</u>		<u>~2026년</u>

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7)	감면대상	농기계, 관정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면내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2023년			~2026년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들의 내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주요 곡물 가격의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어려움, 농업기계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은 자경농민에게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각 10%p씩 상향하려는 조해진의원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 연장에 더하여 추가적인 감면율 상향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영어민⁴⁾·임업인⁵⁾ 등 유사 감면 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상과의 형평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체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감면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6조)]

(단위: 천 원)

연도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항)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2항)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19	52,488	67,199,542	12,233	9,340,414
2020	56,322	79,436,517	12,880	9,759,804
2021	65,169	102,863,785	10,510	9,224,813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최근 3년간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7조)]

(단위: 천 원)

연도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1항)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제2항)			
	감면 건수	감면액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19	660	54,449	3,552	390,603	45,828	456,630
2020	623	45,403	4,362	428,375	50,912	429,607
2021	463	30,806	3,927	371,222	57,241	461,155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나. 귀농인이 취득하는 임야 및 준보전산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박덕흠의원안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개정안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준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u>취득하는 농지</u> ,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④ ----- ----- ----- ----- ----- ----- ----- <u>취득</u> <u>하는 농지 및 임야</u> ----- ----- ----- ----- ----- -----

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4. (생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생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

-----.

1.2. (현행과 같음)

3. -----
----- 아니하거나,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

4.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u>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u>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u>보전산지의</u>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생략)	----- ----- 산지를 추가적으로----- ----- 산지의 - ----- ----- -----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⁶⁾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으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⁷⁾(이하 “임업인”)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⑥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립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음.

개정안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업인이 취득하는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도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귀농인이 직면하는 신규 산림경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산림경영 유도과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조항이 감면 특례를 부여하는 “귀농인”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인바, 그에 따라 ①농지, ②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③농업용 시설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어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될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현행법 제6조제1항도 자경농민에 대하여 농지,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음.⁸⁾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 3의4. (생략)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립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를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⁹⁾ 보전산지는 공익적인 가치가 크고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제한이 가해짐.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9)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 및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 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보전산지 유형별 허용 행위¹⁰⁾ 요약]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제방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가스공급 등 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 복원 등 7. 전력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제외)의 설치 8. 광물 탐사, 갱내채굴 및 시추시설의 설치 9.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전사자 유해, 범죄피해자의 조사·발굴 11. 임도, 산촌산업개발시설 등의 설치 12. 수목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의 설치 13. 광물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 탐사 및 개발 14. 산사태 예방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15.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설치 16. 농림어업용 생산·가공시설 등 시설의 설치 17. 석유비축, 방송통신설비 등 공공용 시설의 설치 18.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설치 19. 종교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의 설치 20.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제방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가스공급 등 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 복원 등 7. 전력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제외)의 설치 8. 광물 탐사, 갱내채굴 및 시추시설의 설치 9.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전사자 유해, 범죄피해자의 조사·발굴 11. 임도, 산촌산업개발시설 등의 설치 12. 수목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의 설치 13. 광물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 탐사 및 개발 14. 산사태 예방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15.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증축, 개축 16. 공항, 항만 등 공용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17.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그에 비하여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고, 그 규모도 전체 산지면적의 21%에 이르는바, 임업인이 취득하는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할 경우 투자가치가 있는 준보전산지에 대한 취득이 증가하며 동시에 투자가치가 없는 보전산지에 대한 취득 유인은 저하될 것으로 생각됨. 이는 임업인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통하여 산지 보전 및 임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현행

10) 「산지관리법」 제12조

감면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도별 산지구분 현황]

(단위 : ha)

구분	전체면적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	공익용	
서울특별시	13,755	657	10,938	2,160
부산광역시	34,299	933	22,342	11,024
대구광역시	92,965	38,238	45,219	9,508
인천광역시	38,718	10,979	7,232	20,507
광주광역시	18,293	466	15,695	2,132
대전광역시	27,686	3,030	22,517	2,139
울산광역시	66,214	23,385	32,687	10,142
세종특별자치시	23,768	10,872	4,326	8,570
경기도	526,745	237,924	150,897	137,924
충청북도	491,463	263,796	130,063	97,604
충청남도	406,132	201,312	48,658	156,162
전라북도	445,013	211,026	126,500	107,487
전라남도	691,436	386,693	130,114	174,629
경상북도	1,309,194	795,302	267,524	246,368
경상남도	694,309	373,791	173,096	147,422
제주특별자치도	86,054	12,283	22,127	51,644
강원특별자치도	1,369,087	752,140	455,401	161,546
합계	6,335,131	3,322,827	1,665,336	1,346,968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임업용 임야는 농업인·귀농인 보다 오히려 임업 후계자·독립가 및 귀산촌인의 산업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준보전 산지는 행위 제한이 없어 공장용지 등의 개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준보전산지까지 세제지원을 할 경우 사권제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 보전산지에 대한 감면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김교홍(I)·

송재호·안호영의원안 제11조 및 제14조)

개정안은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안호영의원안은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김교홍(I)의원안은 농업협동조합 등과 각 조합 중앙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송재호의원안은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11조 및 제14조).

현행	김교홍(I)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
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2. (생략)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④ (생략)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
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
업협동조합중앙회, 수
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
매·판매 사업 등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
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② -----

-----2026년 12월

31일-----.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
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③

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④·⑤ (생략)	<u>2028년</u>	<u>2026년</u> <u>2월 31일</u>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14③) 송재호의원안 : 3년(~2026년)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고(제11조제1항 및 제2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
산세의 100분의 2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며(제14조제1항),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업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제14조제4항).¹¹⁾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은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최근 연이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현행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은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원활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기 위해 결성되는 조직으로 현행법은 이들 협동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합과 각 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1차 산업의 효율적인 영위를 도모하게 하고 적정 수준의 농림수산업 기반유지를 위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오고 있음.

[최근 3년간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11조)]

(단위: 천 원)

연도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항)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2항)			
	감면건수	감면액	취득세		재산세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2019	2,112	24,521,840	3,201	16,325,759	24,435	4,463,131
2020	1,450	13,596,144	3,683	20,930,266	25,999	4,820,130
2021	1,033	12,662,618	2,766	20,613,483	25,364	5,034,777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최근 3년간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14조)]

(단위: 천 원)

연도	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1항)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3항)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2019	16	129,583	390	390	1,379	27,511,804	14,555	21,718,528
2020	12	226,466	354	493,592	1,603	24,504,742	14,783	22,915,829
2021	10	30,651	325	442,909	1,484	23,736,057	14,935	24,569,493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개정안은 이러한 세제 지원이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조합 및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경제적 기여 외에도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림수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들의 비교]

구분		현행	김교홍 의원안	송재호 의원안	안호영 의원안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1①,②)	감면대상	①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②영농·유통·가공 직접사용 부동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면내용	①취득세 75% ②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기한	~2023년			~2026년
농업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에 대한 감면 (§14①)	감면대상	각 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 부동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면내용	취득세 25% 재산세 25%			
	일몰기한	~2023년	~2028년		~2026년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14③)	감면대상	각 조합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면내용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2023년	~2028년	~2026년	~2026년

이와 관련하여 3건의 개정안은 감면 내용 및 일몰기한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바, 이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윤미향·송재호의
원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구매·판매 등의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현행	윤미향의원안	송재호의원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u>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u>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u>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u> ----- ----- ----- ----- ----- ----- ----- ----- -----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0분의 25를, 과세기준
일 현재 그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
0분의 25를 각각 2023
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 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
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
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u>2017년 12</u> <u>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1. ~ 3. (생략)	----- ----- ----- ----- ----- ----- ----- <u>2026년 12</u> <u>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 사업 및 농어민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음.

농협경제지주는 농업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가 수행하던 구매·판매사업 등을 분할하여¹²⁾¹³⁾ 2012년에 신설된 회사로서 농협중앙

1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

회가 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농협협동조합법」¹⁴⁾에 의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산지유통조직 육성 사업, 농축산물의 제조·가공 및 도매·소매 사업, 농산물 공판장 사업 등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농협중앙회로 보아 구매·판매사업 수행 시 양자 간의 동일성이 인정됨.

농업경제지주회사 신설 당시, 농협중앙회가 영위하던 구매·판매사업 등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었으며, 이러

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생략)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4. 상호금융사업

(생략)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4) 「농협협동조합법」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7년 말까지 각 25% 감면하는 제14조의2¹⁵⁾를 신설하였으나, 별도의 일몰기한 연장 없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감면이 종료되었음.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 및 회원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을 수행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농업의 보호·육성과 농산물의 수급균형 및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타 조합중앙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①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②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③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는바,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중앙회의 구매·판매 등의 사업과 이를 위한 생산·검사 사업을 이관받아 수행중이므로 분할된 사업 영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

윤미향의원안의 경우 기존 농협협동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인 제14조를 통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송재호의원안의 경우 일몰기한이 경과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과거의 감면 규정(제14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소위 심사 시 양자간의 병합심사 및 법제적으로 적절한 개정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송재호의원안의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뿐만 아니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자회사 중 유통자회사의 경우 현행법 제15조제1항16)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씩 감면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감면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농협경제지주 소관 자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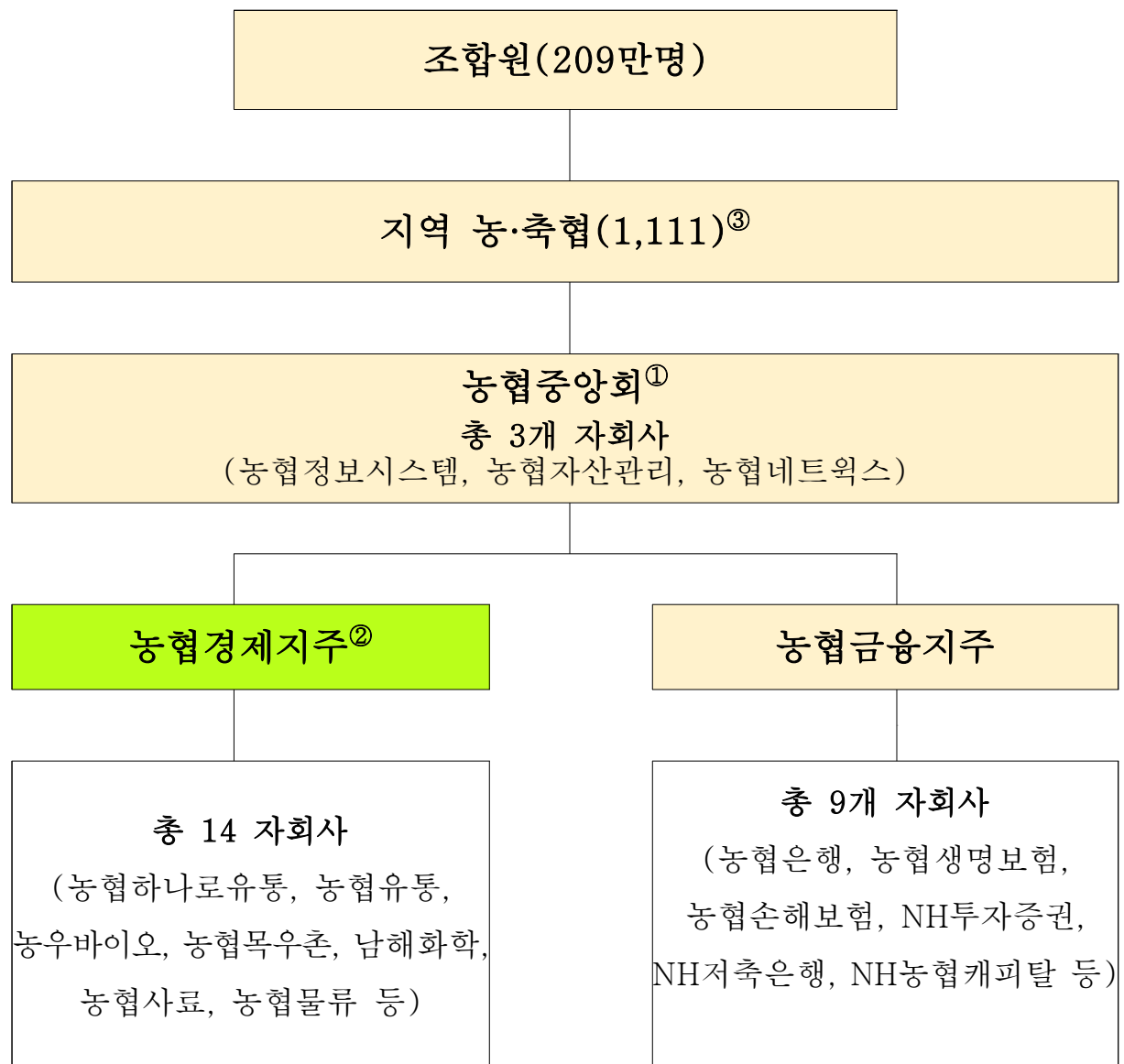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이 2023년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 현행 법령의 적용기한을 감안하면 개정세법의 시행시점에 따라 취득세의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행태와 취득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¹⁷⁾

1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 2023. 8. 4.)

□ 농협 조직체계

- ① (중앙회)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
- ② (농협경제지주) 농업인·지역 농축협외 구매·판매 등 사업
- ③ (지역 농축협) 농업인의 구매판매 사업



※ 2012.3. 농업경제사업 활성화 및 금융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가 수행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지주 금융지주 설립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가. 다자녀 양육자 또는 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신설 등(서정숙·강득구·김미애·김영선의원안 제22조의2)

개정안들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양육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정숙의원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는 내용이고, 강득구·김미애의원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2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강득구의원안) 또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김미애의원안)로 변경하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김미애의원안)하는 내용이며, 김영선의원안은 2명 이하의 자녀 양육자라도 승차정원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14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임(안 제22조의2).

[개정안들의 비교]

구분		현행	서정숙 의원안	강득구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김영선 의원안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22)	감면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취득 자동차	(현행과 같음)	2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취득 자동차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취득 자동차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취득 자동차
	감면 내용	취득세 면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3명 이상 : 취득세 면제 · 2명 이하 & 승차정원 6명 이하 : 취득세 면제 (140만원 한도)
	일몰 기한	~2024년		현행과 같음	~2025년	(현행과 같음)
미성년 자녀 양육자의 자동차세 감면 신설 (\$22⑤)	감면 대상	(신 설)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취득 자동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면 내용		· 1명 : 자동차세 10% · 2명 : 자동차세 20% · 3명 이상 : 자동차세 50%			
	일몰 기한		~2026년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140만원 한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⁸⁾

개정안은 동 감면의 대상을 24세 이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강득구의원안) 또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김미애의원안) 또는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김영선의원안)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더해 자동차세 감면까지 가능하게 하여 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더욱 부여하려는 것으로, 출생아수의 지속적인 감소 상황에서¹⁹⁾ 저출생 대응 지원 및 양육비용 경감을 통해 양육여건을 개선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상 “다자녀”를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중이 지난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축소되고 있는 점과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짐.²⁰⁾

다만, 피양육자의 연령을 기존 18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상향하는

18) 승차정원이 6인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감면, 이외의 감면 대상 자동차는 면제 대상임. (법률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는 적용)

19)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2012년 1,297명에서 2017년 1,052명, 2022명 0.78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잠정)').

20) 교육부가 2023. 8. 16.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검토 및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인바,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예정임.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차원의 다자녀 기준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임(부산광역시의 경우 2023. 10., 대구광역시의 경우 2024. 1. 시행 예정).

강득구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동 조항의 취지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의 감면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예컨대 개정안에 따르면 2명의 자녀가 모두 「민법」상 성인이 되어도 24세 이전까지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강득구의원안은 현행법에 따를 때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김미애의원안 또는 김영선의원안처럼 자녀수의 기준을 2명 이하로 완화할 경우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어도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개정안이 의도하는 취지는 일정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김미애의원안에 따를 경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어야 동 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나 김영선의원안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1명만 양육하고 있어도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김영선의원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나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승차정원 6인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여 지방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황(제22조의2)]

(단위: 천 원)

세목	취득세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19	36,093	52,022,541
2020	34,965	55,655,336
2021	30,865	52,217,407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또한 강득구의원안·김영선의원안이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동조항의 일몰기한을 별도로 연장하고 있지 않은 데에 반해 김미애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더해 자녀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²¹⁾하여 감면하는 내용인 서정숙의원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²²⁾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²³⁾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21)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일 경우 자동차세의 100분의 10, 2명일 경우 100분의 20, 3명 이상일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 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차,²⁴⁾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²⁵⁾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어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이 한정적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2년 기준 전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수는 약 46만 가구 이상이므로 자동차세를 추가로 면제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022년도 전체 가구수 및 미성년 자녀수별 가구수]

(단위: 가구)

	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가구수	4,690,686	1,989,297	2,245,478	417,125	33,998	4,788
전체 가구수	22,383,187					

※자료: KOSIS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은 바람직하나,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적 성격의 조세로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이외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약 480억원('22년 기준)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바, 자동차세는 시·군세로서 기초지자체의 주요 세입원이고 자동차세 감면 신설 시 연간 약 2,869억원의 감면이 추가로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자동차세 감면 신설 시 세수 추계]

구 분	합계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자동차세 총액	15,361억원	6,515억원	7,353억원	1,493억원
감면율	-	10%	20%	50%
감면 예상 규모	2,869억원	651억원	1,471억원	747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22년 자동차세 총액에서 총 일반가구 중 유자녀 수에 따른 가구 비중 산출
(예시) 1자녀 가구 자동차세 총액(6,515억원)= 73,301억원× 8.89%(1자녀 가구/ 일반가구)

나.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정우택(Ⅲ)의원안 제38조제4항)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 이외에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u>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u> 1. (생략) ⑤ (생략)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u> ----- ----- ----- ----- ----- ----- -----. 1.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중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²⁶⁾

[최근 3년간 의료기관 개설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현황(제38조제4항)]

(단위: 천 원)

세목	취득세		재산세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2019	2	35,154	175	631,539
2020	14	359,335	185	738,574
2021	19	459,005	41	149,221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종교단체인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 12. 28.>
-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학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③ 삭제 <2018. 12. 24.>
-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재단법인과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에 사이의 과세형평성과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지니는 공적 의료의 기능 등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바, 특수한 목적 하에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는 취득세·재산세 50%의 감면을 적용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는 지방 의료원에 대하여는 각 75%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민간이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상의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의 영리성을 고려하여 취득세 30%, 재산세 50%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설립 주체별 의료기관의 지방세 감면 현황]

구분	개설주체	감면율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제38조의2)	취득세 75%, 재산세 75%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85%)
	근로복지공단(제27조)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제30조제2항)	
	국립대병원 등 ²⁷⁾ (제37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 ²⁸⁾ (제40조)	
	대한적십자사(제40조의3)	취득세 50%, 재산세 50%
민간법인	사회복지법인(제22조)	취득세 30%, 재산세 50%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취득세 40%, 재산세 60%)
	의료법상 의료법인(제38조제1항)	
	종교단체(제38조제4항)	
	학교법인(사립대학 부속병원) (제41조제7항)	

이를 감안하면, 현행법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 및 기여의 수준에 따라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모호하다는 점²⁹⁾ 등을 감안할 때,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위와 같은 현행법 체계에 적합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며,³⁰⁾ 비영리 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수는 2022. 3. 기준 315개에 이르는바, 동일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함에도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과 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더 엄격한 관리·감독(설립 요건, 허가 취소 규정 등)을 받는 등 비영리 재단법인

27)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치과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28) 인구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29) 「의료법인의 타 법인 출자 허용 논란을 계기로 본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호, 2011. 1. 20.

30)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과의 차별성이 인정되고, 개정안에 따른 경우 담세력이 있고 의료기관 규모가 큰 소수의 법인·의료기관에 감면 혜택이 귀속될 가능성³¹⁾이 있으므로, 2024년 일몰 도래 시기에 맞추어 법정 절차에 따라 지방세 특례원칙 등에 근거한 타당성 검토 후 감면 신설을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31)

<감면 신설(재단법인 限)에 따른 '24년 감면액 추계>

(단위: 억원, %)

구분	병원급	한방병원	의원급	합계
소계 (비중)	26.7 (78%)	0.9 (2.6%)	6.6 (19.4%)	34.2 (100%)
취득세	2.7	-	0.3	3
재산세 (비중)	24 (77%)	0.9 (2.9%)	6.3 (20.1%)	31.2 (100%)

※ 72개 의료기관(병원급26개, 한방병원21개, 의원급25개)의 '22년 취득세·재산세 납부액 기준

다.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이동주 의원안 제40조의4 신설)

개정안은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지원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임(안 제4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의4(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소상공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은³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시설, 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소상공인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는³³⁾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재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상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동 법과 「소상공인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내용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그에 속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³⁴⁾ 재난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3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단 등은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요구됨.

다만,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피해 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 선정에 재량³⁵⁾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재난 및 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은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을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 및 「소상공인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기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상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하

3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는 규정은 장애인·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제17조 및 제29조)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제68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³⁶⁾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생업활동을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 또는 소유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동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생업활동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의 유형은 다양하고, 재난 피해자는 다수인바,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재난 피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 감면 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난 피해를 입은 건축물 등 물건을 정리·복구하거나 대체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는 기 감면 중³⁷⁾이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6)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만을 감면하는 규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양육목적 자동차(제22조의 2), 자동차의 기계결합 등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제66조),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형자동차(제67조)에 대한 감면임.

37) 「지방세특별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서병수(I)의원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각각 경감한다. ④ (생략)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2026년 12월 31일</u> -----.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각각 경감한다. ④ · ⑤ (생략)	----- ----- ----- ----- ----- ----- ----- ----- -----2026년 12 월 31일-----. ④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³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법인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보유·활

3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용 및 계약의 이행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하부조직임.

[최근 3년간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42조제3항)]

(단위: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19	2	103,247	58	21,163
2020	2	278,413	79	25,250
2021	1	668	73	26,388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기술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 산학연협력을 관리 지원하는 조직으로 대학, 기업, 정부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 취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산학협력단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나.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서병수(Ⅱ)의원안 제45조의2)

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4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 ----- ----- ----- ----- -----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현행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³⁹⁾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3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⁴⁰⁾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⁴¹⁾]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삭제 <2011.12.31>
3. 한국천문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이 법에 따라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동안 현행법 제45조⁴²⁾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았던 과학기술단체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320여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계획을 감안하여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신설⁴³⁾한 것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안정적인 연구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신설 2020. 1.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3) 2017. 12. 26. 신설

[최근 3년간 기초과학연구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45조의2)]

(단위: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19	38	4,228,482	152	6,081,140
2020	45	3,640,599	217	7,463,431
2021	54	15,900,283	207	5,752,309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2023. 10. 25.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동 감면의 적용 대상을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으로 확대하되 감면율을 취득세·재산세 각각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안과의 병합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가. 국민신탁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 신설 (천준호의원안 제53조)

개정안은 국민신탁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 -----국민신탁법인 및 국민신탁단체가----- ----- ----- ----- -----.

현행법 제53조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문화유산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국민신탁법인 현황]

구 분	문화유산국민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
법인형태	특수법인 (감독관청 : 문화재청)	특수법인 (감독관청 : 환경부)
설립근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활동목적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보전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활용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보전가치 있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활용
지방세 지원	취득세, 재산세 면제 (최소납부세제는 적용)	

국민신탁법인제도는 정부의 직접 관리에 한계가 있는 문화·환경적 가치가 큰 자산을 민간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신탁 받아 보전·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유산신탁법」 제정 후 2007년부터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지방세법」 44)에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민신탁단체에 대하여도 국민신탁단체가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44) 법률 제8835호, 2007. 12. 31.개정

[국민신탁법인과 국민신탁단체의 비교]

구 분		문화유산국민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	국민신탁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법인형태		특수법인 (감독관청 : 문화재청)	특수법인 (감독관청 :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근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민법」 등 (문화재청 또는 환경부 지정*) * 법 §20의2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활동목적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보전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활용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보전가치 있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활용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연환경자산 영구 보전·관리·활용
세제지원		취득세, 재산세 면제		해당 없음
수 행 업 무	차 이 점	• 기본계획 수립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법 §5)		해당 없음
		•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매년 수립(법 §6)		
		• 실태조사 실시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법 §6의2)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 목록작성 후 공고(법 §8)		
		• 예산 :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승인 후 공개(법 §14)		
		• 회계 :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 작성 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 및 공개(법 §14)		• 회계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 및 공개(법 §20의4)
공 통 점	• 보전·관리 계획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해 보전·관리계획 수립(법 §7)		• 보전·관리 계획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해 보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법 §20의5)	

「문화유산신탁법」은 2022년 이전까지 “국민신탁”에 대하여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 등을 받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보전·관리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음. 그러나 법정법인인 국민신탁법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집중됨으로써 문화유산 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인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21. 5. 18. 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국민신탁의 주체에 “국민신탁단체”도 포함하였음.

그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2022. 6. 환경부로부터 국민신탁단체로 최초 지정⁴⁵⁾을 받아 활동해오고 있음.⁴⁶⁾

국민신탁단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영구 보전·관리활동을 수행한다는 측면⁴⁷⁾에서 국민신탁법인

4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계획
3. 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
2. 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 및 수행능력
3.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계획의 타당성
4.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46)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동강 제장마을, 연천 DMZ 일원 임야, 함평 군유산 임야, 임진강 두루미서식지를 보전재산으로서 소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영농법인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영농법인이 강화 매화마을 군락지, 원흥이방죽 두꺼비 서식지, 내성천 범람원,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등을 보전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음(출처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2022. 12. 31. 기준)

47)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정관」 (2022년 2월 20일 개정)

제3조(사업) 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그 활동목적이 동일하나, 별도의 지방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에 따라 국민신탁법인과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민신탁단체에 대하여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신탁법」 제20조의6에 따라 동법 제15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신탁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단체 자체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⁴⁸⁾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신탁의 특성상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감면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신탁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승인 후 공개할 의무를 지는 등 국민신탁단체에 비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 점⁴⁹⁾을 감안하여 국민신탁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

-
1. 멸실위기에 처한 자연자원 및 생태계와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및 이의 영구적 보전 및 공평한 이용을 위한 입법 청원 관련 사업
 2. 자연 및 문화유산(내셔널 트러스트)지역 지정, 교육, 관리·운영, 홍보 관련 사업
 3. 기타 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49)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정관」에 따르면, 한국내셔널트러스트도 법인 해산 시 잔여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신탁법인과 국민신탁단체가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몰 도래 연도(2024년)에 법정 절차에 따라 지방세 특별 원칙에 근거한 타당성 검토 후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과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고, 법인이 모금한 연간 기부금과 활용실적은 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주무관청인 환경부는 법인사무에 대한 감사·감독권을 갖고, 매년 사업실적과 감사결과를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 설치 선박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및 자발적 설치 선박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 면 신설 (서병수(Ⅲ)·서삼석의원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개정안은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서병수(Ⅲ)의원안은 기존 등록면허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고, 서삼석의원안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말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현행	서병수(Ⅲ)의원안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 ----- ----- ----- ----- -----

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 -----2026년 12월 31일-----.
--	-----------------------------------

현행	서삼석의원안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u>설비</u> 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u><신 설></u>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 ----- ----- ----- -----설비 (이하 “단말기”라 한다)----- ----- ----- -----. 제64조의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한 무선국에 대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현행법은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 제1항⁵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⁵¹⁾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는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⁵²⁾ 해양수산부는 2016년

5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단말기의 종류 및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1) 무선국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제1항)

제3종 : (인구 50만 이상의 시) 40,500원 / (기타 시) 22,500원 / (군) 12,000원

5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가. 선박의 위치, 침로(針路), 속력 및 항로 등 선박운항에 관한 정보
 - 나. 해양의 수심, 지형, 지질 등 수로(水路) 및 해도(海圖)에 관한 정보
 - 다. 선박의 통항량, 해양사고 및 항행경보(航行警報) 등 선박교통에 관한 정보
 - 라. 조류(潮流), 조석(潮汐) 및 해양기상 등 해양관측에 관한 정보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생산된 정보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

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202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이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유사하게 바다에서 바닷길을 안내하고, 교통상황·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해상 내비게이션으로,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온 것으로 보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개요]

- ☐ (시행) ‘21.1.30(토)부터 24시간 서비스 / 무료
- ☐ (근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약칭)」 제15조
- 제1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제공 서비스의 종류)

해양사고 예방 지원	해양안전 · 편의 지원서비스
① 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① 선박 간 문자·음성·영상 통합통신
② 충돌·좌초 예방 지원	② 자동 입·출항 신고(어선)
③ 실시간 해양안전 정보	③ 긴급구조(SOS) 요청 기능
④ 항로 검증(단말기) 및 안내(앱)	④ VTS 서비스 이용 안내

※자료: 해양수산부

서병수(Ⅲ)의원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동 등록면허세 면제조항의 일

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기구·선로(線路)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물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인바, 단말기 설치선박의 다수는 소형선박의 어업인으로,⁵³⁾ 어업인들의 조업활동 지원 및 해양사고 예방 등의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몰 기한 연장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목으로 감면의 취지가 일정부분 달성된 경우 가급적 감면 특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른 단말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이 아닌 경우에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하는 선박이 존재하는바, 서삼석의원안은 이러한 선박들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 면제를 통해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2021년 이전에 건조되어 법률상의 설치 의무는 없으나 단말기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기존 선박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 면제를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 관리 및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⁵⁴⁾

53) 2023. 6. 30.기준 단말기 설치 선박 총 6,702척 중 어선이 5,633척, 비어선이 1,069척임(※출처: 해양수산부)

54)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안전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구축·운영중인 어선 자동출입 항신고 장비(V-Pass)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단말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바다내비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단말기 자발적 설치 선박 현황]

(단위 : 척수)

2020	2021	2022	2023. 8.	합계
305	1,971	2,501	749	5,526

※자료: 해양수산부

다만, 현재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제2항⁵⁵⁾에 따라 송·수신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중이므로, 보조금 등의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 중복의 최소화 원칙⁵⁶⁾⁵⁷⁾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 신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종 및 지원금액]

	어선		비어선		지원금액
	톤수 및 선령	선종	톤수	선종	
1차 보급사업 ('19.9)	3톤 이상, 20년미만	어선, 낚시어선	-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180만원 정액

5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등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단말기의 종류 및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57) 다만, 송·수신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상 단말기 설치 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음.

2차 보급사업 (‘20.3)	3톤 이상, 20년 미만	어선, 낚시어선	-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시행지침 변경 (1차, 2차) (‘20.9)	3톤 이상, 25년 미만	어선, 낚시어선	-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3차 보급사업 (‘21.7)	3톤 이상, 25년 미만	어선, 낚시어선	-	-	50%정률 (154만원 한도)
시행지침 변경 (3차) (‘22.4)	2톤 이상, 선령제한 폐지	어선, 낚시어선	-	-	
4차 보급사업 (‘22.4)	2톤 이상	어선, 낚시어선	-	-	
시행지침 변경 (2차) (‘22.10)	-	-	-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레저기구	180만원 정액
5차 보급사업 (‘23.6)	톤급제한 폐지	어선, 낚시어선	-	-	50%정률 (250만원 한도)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 범정 설치 의무대상 선박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더 이상의 일몰기한 연장없이 감면 종료가 타당하며, 등록면허세 감면 없이도 자발적으로 이를 설치 선박이 다수인 점, 등록면허세의 수수료적 성격 및 소액(12,000~40,5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담세력이 극히 낮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감면 배제가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

세제 배제 (정우택(Ⅱ)의원안 제68조제2항 및 제177조의2)

개정안은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난 피해로 인해 추징 유예기간 내에 중고자동차등을 매각 또는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하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및 제177조의2).

현행	개정안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u>2년</u>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u>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u>	② ----- ----- <u>3년</u> ----- ----- ----- --. ----- <u>중고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u> ----- ----- ----- ----- -----.
<신설>	1. <u>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u>

<신 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신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

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중고자동차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중고자동차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2년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⁵⁹⁾

개정안은 고금리 상황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고자동차의 매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인바,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 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중고자동차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과세제도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취득세 추징의 일반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⁶⁰⁾ 중고자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차 매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2013년 법 개정 당시 취득세 추징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다시 3년으로 완화할만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재난피해 취득세 추징 예외사유 규정

현행법은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⁶¹⁾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6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

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추징 예외사유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매매용 또는 수출용 중고자동차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⁶²⁾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자동차를 폐차하게 된 경우도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인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개정안은 수출용 중고자동차,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 중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만 재난피해로 인한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중고선박이나 항공기, 중고기계장비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는바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최소납부세제 배제

현행법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는데, 취득세

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액이 200만원 이하 또는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소납부세제가 배제되며(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과 종교, 학교, 국가 귀속용 부동산 등 공익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예외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법 제177조의2제1항제2호).⁶³⁾

개정안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배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금리 인상에 따른 판매 부진, 재고 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자동차등 업계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해외사례⁶⁴⁾와 같이 처음부터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64) 일본 및 미국의 일부 주(미주리, 오키오)는 매매업자의 상품용 중고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에 대하여 논의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이라는 일관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개세주의, 조세형평성 가치를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써, 현행법상 최소납부세제 적용 예외 현황을 살펴보면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문화 등 공익성이 큰 분야에서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최소납부세제 적용 예외(제177조의2제1항제2호) 현황]

조문	감면 내용
§7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8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9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1①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3③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6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17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7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20조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30③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면
§33②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35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36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41①~⑥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50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55	문화재에 대한 감면
§62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63②④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66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73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74①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76②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77②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82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84①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85의2①4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9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이를 감안할 때,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넘어가는 중고차량의 가격은 약 4,280만원인바, 중고자동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⁶⁵⁾인 자동차 매매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매매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최근 3년간 취득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감면건수와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매매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현황(제68조제1항)]

(단위: 천 원)

세목	취득세		자동차세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19	1,248,656	897,537,309	1,524,481	54,104,370
2020	1,371,170	993,587,561	1,781,686	58,528,760
2021	1,424,669	1,138,036,207	1,830,738	58,221,371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65) (지역별 중고차 평균 가격) 최저 : (강원) 11,480천원 최고 : (제주) 19,966천원 / 출처 : 한국 소비자원(중고차 거래실태 조사, '21.11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추정 유예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액 적용 배제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추정 자료 및 중고자동차의 매매기간(취득일~매각일)별 판매 현황과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최소납부세액 건수·금액 현황이 필요하나,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자료의 한계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하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⁶⁶⁾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① 추정 유예기간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장기간 미판매된 중고자동차의 감가상각 및 금융비용 등 고려 시 개정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며, ② 재난피해를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연관성 및 피해자의 관리부실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방의회의결로 감면이 가능한 사항이고, 해당 감면의 일몰기한(2024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으로 일몰기한 도래 시 법정 절차에 따른 검토가 적절하다는 입장임.

③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 감면 대부분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고자동차 감면의 경우에만 완화 시 과세불형평이 발생하고, '21년 기준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66)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3. 8. 22.)

액 총 1조 1,380억원(1,424,669건)의 95.6%가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배제⁶⁷⁾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는 납세자의 담세력,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67) 최소납부세제 적용 규모는 496.1억원(4.4%), 102,914건(7.2%) 수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정우택(I)의원안 제70조의2 신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0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u> <u>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

	2. <u>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
--	---

현행법 제70조는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1항), 천연가스 버스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항),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4항)을 그 내용으로 함.⁶⁸⁾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외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⁶⁹⁾ 설치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제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인가받은 공사계획⁷⁰⁾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여객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의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가 감소하였는바, 2022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2023년 9월 기준 여전히 2019년 대비 매표수입금이 30% 정도 감소한 상황임.⁷¹⁾⁷²⁾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71) 여객터미널사업자의 수입은 여객 대상 승차권 판매에 따른 위탁 판매 수수료 및 상가 임대료로 구성됨.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와 관련하여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

그에 비하여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⁷³⁾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경우 여객터미널사업자의 세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여객터미널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 지가, 터미널 이용객 수 및 매표수입금 증감율]

(단위 : 원, 명)

연 도	공시지가	지 가	증감율	이용객 수	증감율	매 표수입금	증감율
2017	1,418,547	6,486,247,525,866	-	173,598,823	-	158,463,748,398	-
2018	1,477,983	6,842,290,441,772	5.49%	172,456,818	△0.66%	160,508,230,684	1.29%
2019	1,545,399	7,243,982,731,750	5.87%	168,700,839	△2.18%	175,432,810,879	9.30%
2020	1,546,152	7,479,014,026,620	3.24%	89,573,152	△46.90%	90,514,326,622	△48.41%
2021	1,679,722	7,948,540,360,570	6.26%	79,864,513	△10.84%	81,453,129,337	△10.01%
2022	1,729,197	8,578,570,711,618	7.93%	93,387,308	16.93%	101,210,029,628	24.26%
2023	1,682,958	8,152,029,402,224	△4.97%	101,801,640	9.01%	122,086,980,096	20.63%
평 균	1,582,851	7,532,953,600,060	3.97%	125,626,156	△5.77%	127,095,607,949	△0.49%

※자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되는 “대중교통시설”⁷⁴⁾로서,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시외접근권을 위한 공공성을 띄고 있음. 경영악화 등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폐업하는 경우,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농어촌이나

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73) 최근 7년('17. ~ '23.)간 전체 여객터미널 공시지가 평균액은 1,583,287원이며, 지가는 연 평균 2.96% 상승하였음.

7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도서산간 지역 이용자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이후 여객수요 및 매표수입 급감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폐업한 여객터미널은 전국 23개소이며, 매표업무 중단 터미널은 7개로 집계(2023.6.1.기준)되고 있는바, 폐업 또는 매표업무를 중단한 터미널의 수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많음을 알 수 있음.

[여객터미널 휴·폐업 및 매표중단 현황]

구 분			연번	폐업일자	터미널 명칭	사 유	현재 상황
터미널 폐업	경 기	포천시	1	21. 7. 1	운천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공원 조성
		성남시	2	23. 1. 1	성남종합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버스사업자 임시 운영
		고양시	3	23. 6. 1	화정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터미널 폐쇄
		이천시	4	-	장호원터미널	면허 취소	
	강 원	원주시	5	21. 1. 22	원주고속터미널	경영악화 터미널 매각	원주시외터미널로 통합
	충 북	음성군	6	18. 12.	금왕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부도	군에서 임시 운영
		영동군	7	21. 1. 1	영동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사업 포기	군에서 임시 운영
	전 북	김제시	8	21. 3. 1	원평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시에서 부지 임차 사용 (차고지 형태로 운영)
		남원시	9	22. 4. 1	남원고속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남원시외터미널로 통합
		익산시	10	23. 1. 1	익산고속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익산시외터미널로 통합
	전 남	광양시	11	20. 7.	광양종합터미널	경영악화로 부도	시에서 인수 운영
			12	20. 2.	곡성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군에서 임시 운영
			13	20. 2.	석곡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군에서 임시 운영
		고흥군	14	21. 2.	고흥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군에서 임시 운영
			15	21. 1.	녹동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군에서 임시 운영
		강진군	16	17. 12.	강진여객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군에서 임시 운영
		영암군	17	21. 8.	영암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군에서 임시 운영
			18	21. 6.	신북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군에서 임시 운영
	경 북	청도군	19	20. 8.	청도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군에서 임시 운영
		울진군	20	21. 7. 28	매화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
			21	21. 7. 28	기성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

구 분			연번	폐업일자	터미널 명칭	사 유	현재 상황
		성주군	22	20. 6.30	성주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군에서 임시 운영
		청송군	23	19. 12. 9	주왕산시외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	-
터미널 매표중단	경 기	연천군	1	21년 ~	전곡터미널	23년 3월까지 매표실적 없음	
	전 북	남원시	2	19년 ~	반선터미널	19년부터 매표실적 거의 없음	
		정읍시	3	22년 ~	태인(고속)터미널	22년부터 매표실적 없음	
		고창군	4	20년 ~	해리터미널	20년부터 매표실적 없음	
	전 남	영암군	5	22년 ~	시종터미널	22년부터 매표실적 없음	
	경 남	김해시	6	22년 ~	진영터미널	22년부터 매표실적 없음	
		양산시	7	22년 ~	통도사	22년부터 매표실적 없음	

※자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23. 6. 1.기준

따라서 지방 대중교통의 핵심거점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지역 간 및 지역 내의 이동을 촉진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 경영악화로 폐업한 터미널의 상당수를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세 법령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면서 토지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⁷⁵⁾

7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각 목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토지의 분류에 따른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0~5,000만	0.2%	0.2%	0.2%
5,000만~1억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2억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2억~10억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자료: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바탕으로 작성

*: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0.07%),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4%) 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 0.2%~0.5%)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한계세율 0.2%~0.4%)에 비해 재산세가 저율(0.2%)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이미 다른 토지에 비해 재산세 부담을 경감받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⁷⁶⁾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목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마. 생략)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76)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

이를 종합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경영 안정 도모 필요성과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성, 이미 저율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세제 지원을 통한 터미널시설 개선 및 지역주민 교통복지 발전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간 규모·여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정 감면보다 조례를 통한 지역별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감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은 2024년으로, 2024년 일몰도래 시 지방세입을 고려하여 재설계 등 법정 절차에 따른 검토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라. 도시첨단물류단지 지방세 감면 신설 (최기상의원안 제71조제1항)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7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하여 감경이 가능함.

「물류시설법」에서는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구분하고,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닌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정의하고 있는데,⁷⁷⁾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입이 발표되고, 같은 해 12월 「물류시설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7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6의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6의3.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비교]

	기존 물류단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목적	물동량 처리 중심의 지역물류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판매시설 중심	물동량 창출 및 집적화를 통한 도심물류서비스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형 판매시설 중심(온니채널)
규모	중대형규모(10만㎡ 이상)	중소형규모(3만~10만㎡)
건축물	토지용도별 개별 건축	입체형복합 건축
주기능	기업물류(B2B): 제조 및 생산, 유통 및 도소매 물류	생활물류(B2C): 전자상거래 기반 생활밀착형 물류
크기/가치	중대형, 중저가 화물	소형,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차량	간선운송, 중대형 화물차 이용	지선운송, 중소형 화물차 이용
회전율	1일~수개월	반일~수일
수익원천	물류시설 운영수입	물류 효율화/서비스 개선, 수배송 시간 절감

※자료: 국토교통부

[「물류시설법」의 개정 전 후 비교]

개정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타법개정]	개정 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6의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
<신 설>	

	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6의3.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①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하 생략)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하 생략)
<신 설>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①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물류시설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조례·「농업·농촌기본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⁷⁸⁾ 현행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도 지방세 지원을 통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조례·「농업·농촌기본법」·「농지법」·「산지관리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조항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시설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사용하는 경우에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물류시설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는 일반물류단지만을 의미하므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물류시설법」상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도 위와 같은 지방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제도 도입 이후, 시범단지로 6개소가 선정(2016.6.)되었으며 현재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1개소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어있고, 서초구 한국화물터미널은 단지 지정절차 진행중에 있는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통하여 도시물류서비스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현황]

용도	지역	단지 명칭	면적(m ²)	추진현황
유통업무 설비	서울(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156,071	토지소유주(1,300명)와 개발방향 협의 중
일반물류 터미널	서울(서초구)	한국화물터미널	94,949	'25년 착공, '28년 준공 예정
	서울(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104,244	'22.1월 지정신청(서울시)
	충북(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56,224	사업시행자 개발 검토 중
	광주(북 구)	광주화물터미널	35,326	
	대구(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70,022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물류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바,⁷⁹⁾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물류단지는 27개이고, 19개의 물류단지가 건설중이며, 11개 단지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였음.⁸⁰⁾

[최근 3년간 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71조제1항·제2항)]

(단위: 천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사업 시행 자	2019	60	205,657	20	363,897
	2020	112	1,583,965	17	356,182
	2021	166	692,965	27	370,025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입주 기업	2019	56	2,314,423	213	866,299
	2020	44	430,816	181	529,211
	2021	65	1,935,469	145	402,970

※자료: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도 2023. 3. 14. 개정 당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물류단지 육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법정 감면율을 인하하되 10%p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감면 결정권을 부여하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사업자의 담세력을 감안하여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바 있음.

79) 2021년 기준 국내 물류산업 기업 총 매출 규모는 154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음(관세청, ‘2021년 운수업조사’)

80)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단지 현황

[현행법의 개정 전 후 비교]

구분			개정 전 (법률 제19231호)	개정 후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물류 단지 (§71 ①・②)	사업 시행자	감면내용	취득세 35% <u>재 산세 35%</u>	취득세 35% <u>재 산세 25%*</u> (*조례 +10%p 추가 가능)
		일몰기한	<u>~2022년</u>	<u>~2025년</u>
	입주 기업	감면내용	취득세 50% 재 산세 35%(5년간)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u>~2022년</u>	<u>~2025년</u>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용 부동산 (§71③)		감면내용	취득세 25% <u>재 산세 25%</u>	취득세 25% <u>(재 산세 감면 종료)</u>
		일몰기한	<u>~2022년</u>	<u>~2025년</u>

따라서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차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적극적 육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일반물류단지와 달리 물류 수요가 큰 도시지역에 입지하여 사업성이 높아 일반물류단지 대비 담세력이 높고, 현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주요 도시지역에서 조성·계획 중으로 자치단체에서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한 자율적 감면이 가능하므로, 일반물류단지 감면의 일몰기한인 2025년에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감면을 재설계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6.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박재호의원안 제76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공공시설물등”)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는 내용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u><신설></u>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u> 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기한까지 종전부동산⁸¹⁾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바,⁸²⁾ 이에 따라 종전

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8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매입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농어촌공사임.⁸³⁾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종전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⁸⁴⁾⁸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도 재산세 면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년 고양 국방대학교의 종전부동산

다.

④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4) 「지방세특별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다만, 동 조항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매입하는 종전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에 있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적용됨.

을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고양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개요]

□ 배경 및 목적

- (배경)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충남 논산)이전 대상인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을 「혁신도시법」에 의해 매입공공기관의 지위로 매입 후 개발 추진
- (목적) 상암DMC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미디어복합타운’ 조성하여 지역발전 도모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기여

□ 사업 개요

- (주요 경과) 부지매입('13.8) → 시설인수('17.12) → 사업계획수립('18.6) → 구역지정제안 수용('19.9) → GB해제총량확보('22.5) → 공람·공고
- (대상지 현황) 서울 마포구와 인접한 고양시 소재 약 10만평 규모 부지

소재지	사업면적	시행자	비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91-7 일원	332,286㎡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제한구역해제 232,330㎡ (70%)

- (총사업비) 약 9,600억원(토지매입비 약 3,700억원, 조성비 등 5,900억원)
- (도입기능) 상암DMC와 연계한 미디어산업 업무단지 및 약 6천여명 거주 가능한 배후 주거단지(약 2,500세대) 개발
- (사업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방식 개발
- (개발이익) 「혁신도시법」에 따라 손익 정산 후 국고 전입

□ 추진 계획

- (향후 일정) '24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GB해제 등 개발계획 승인완료를 위한 후속 인허가 추진
- 구역지정('24) → 설계('25) → 조성공사('26~'28) → 분양('26~'29) → 정산('30)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에서 매입·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형태로 기 납부한 재산세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점⁸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⁸⁷⁾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도 재산세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5. 26.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2325호)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있는바, 일몰기한의 설정은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에

8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며,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과 제4항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익금
2. 종전부동산의 할부매각에 따른 이자
3. 그 밖의 부대수익금

③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담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2.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대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지급이자 등 자본비용
4. 그 밖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개발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부대비용

87) 다만, 매입·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발생 시 이를 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하므로, 재산세 감면의 실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어 유사 감면 조항 사이의 형평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관 목적에 따라 ①부실 재산의 양수, ②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점,⁸⁸⁾ 국가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24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규정으로, 해당 연도에 법정 절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원칙에 근거한 타당성 검토 후 감면 확대 여부 등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나.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개발, 채권의 보전·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7.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가.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김교홍 (Ⅰ)·(Ⅱ)의원안 제87조)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교홍(Ⅰ)의원안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고(안 제87조제1항), 김교홍(Ⅱ)의원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동일하게 5년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8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 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 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 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 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 ----- ----- ----- -----20 28년-----.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u>2023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생략)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u>2023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u>2023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생략)	2. ----- ----- ----- ----- ----- ----- -----<u>2028년</u>-----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 ----- ----- ----- -----<u>2028</u> <u>년</u>-----. 2. ----- ----- ----- ----- ----- ----- -----<u>2028년</u>----- -----. 3.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⁸⁹⁾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문화 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⁹⁰⁾

89)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 다. 내국환
- 라.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 바. 어음할인
-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0)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 바. 어음할인
-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자금의 조성 및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서민금융 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기반 상호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온 취지,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신용·복지사업 등으로 한정적임을 고려할 때, 현행과 동일한 세제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현황(제87조)]

(단위: 천 원)

연도	신용협동조합(제1항)				새마을금고(제2항)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2019	117	4,539,814	2,234	1,291,425	212	5,913,443	3,639	2,001,451
2020	104	3,371,195	2,282	1,381,197	208	7,701,696	3,760	2,185,702
2021	116	4,728,299	2,297	1,542,924	248	9,373,887	3,868	2,463,664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8. 의료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교홍(I)의원안에 따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4년 172.0억원, 2028년 196.5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918.4억원(연평균 18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⁹¹⁾

9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2023. 10. 10.)

8. 지방소득세 특례

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김영주의원안 제97조의4제2항)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6세 이하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임(안 제97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략)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거주자, <u>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u> 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	2. ----- <u>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u> ----- -----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 ⑪ (생략)	----- -----. ③ ~ ⑪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⁹²⁾(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700만원 한도에서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찬가지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를 규

92)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기본공제 대상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하고 있음.⁹³⁾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법령	공제 대상		한도 금액	공제율
제97조의4 제2항	현행	김영주의원안		
제1호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등)	(현행과 같음)	700만원	의료비×1.5%
제2호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현행과 같음)	한도 없음	
		(추가) 6세 이하 자녀		

다만, 현행법 제167조의2제1항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이 장⁹⁴⁾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⁹⁵⁾ 현행법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제97조의4)에도 불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94) 현행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93조~제176조의2)를 의미함.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구하고, 제167조의2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소득세법」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⁹⁶⁾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공제됨.

개정안은 6세 이하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1,000분의 15를 한도 없이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인바 타당한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도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개정안만을 입법하는 경우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연계하여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⁹⁷⁾과 이러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

96)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97) 의안번호 제2123624호, 김영주의원 대표발의(2023. 8. 2.), 2023. 8. 3.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부개정법률안」⁹⁸⁾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상기 법률안들이 의결되어 「소득세법」에 반영되는 경우 현행법 제167조의2에 의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정안의 입법목적이 일정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6

98) 의안번호 제2124151호, 정부 제출 (2023. 9. 1.), 2023. 9. 4.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임.